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주’ 를 ‘전봇대’ 로 용어 변경〉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9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 변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1.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 변경

개정안은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¹⁾의 추진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²⁾에게 요청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제목의 ‘전주’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이므로 이를 ‘전봇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³⁾에서는 법령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이 많으면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므로 국민에게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입법 의도와 제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법제처가 제시한 법령 정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법령문은 직접적

-
-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이하 생략)

2)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2023, pp.5-12

으로 그 적용 대상이 되거나 필요해서 찾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써야 하므로 어려운 한자어 등은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야 하며, 어려운 한자어는 아니지만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고유어가 있으면 되도록 한자어 대신 고유어를 써야 함.

‘전주’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이고 ‘전봇대’와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⁴⁾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는 정비 대상 용어인 ‘전주’를 ‘전봇대’로 고치도록 권고⁵⁾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2조의 경우 제목에서는 ‘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본문에서는 이를 ‘전봇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법문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개정안과 같이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일반 국민도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주’를 ‘전봇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전주: 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어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
전봇대: 전선이나 통신선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2023, p.59

문 의 처
02)6788-5465